

의안번호	2213697
의 퇴 인	천하람 의원
회 답 일	2025. 10. 23.
추 계 번호	25F556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결지배요건의 의결권 없는 주식과 지분 관련 단서조항 삭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안 제2조 10의2 (정의)	연결지배요건을 규정함에 있어, 종전에는 포함되었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중 의결권 없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함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조 10의2 (정의)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연결납세를 위한 연결지배요건(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중 90%)을 규정함에 있어 종전에는 포함되었던 의결권 없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무의결권 주식)을 제외함에 따라 대상 법인이 늘어나게 되는 효과가 수반됨
- (A) 이미 연결납세를 활용하는 연결모법인이 추가적인 내국법인을 연결대상에 포함하게 됨
 - 연결모법인이 새로 다른 내국법인을 연결지배하게 된 경우 해당 연결자법인과의 연결납세방식 적용이 의무(\$76의11)
 - (B) 기존에 연결납세를 활용하지 않는 내국법인이 개정안의 규정 완화로 더 많은 내국법인 포함하는 연결집단을 구성할 수 있게 되면서, 이 중 일부가 연결납세제도를 선택하게 됨
 - (C) 기존에 연결납세를 선택할 수 없었던 내국법인이 연결납세제도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이 중 일부가 연결납세제도를 선택하게 됨

[표 1] 연결지배요건 완화로 인한 영향 범위

			개정안 기준	
			연결납세요건 충족	연결납세요건 미충족
현행 기준	연결납세요건 충족	연결납세 선택	A	—
		개별납세 선택	B	
	연결납세요건 미충족	—	C	D
		개별납세 선택		

주: 음영은 연결지배요건 완화의 영향을 받는 경우

□ 각 법인의 소득과 결손금을 통산하고 연결법인 간 거래손익을 이연하는 제도의 특성상 대상 법인이 늘어나게 되면 법인세의 감소가 예상되고,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 위의 세 가지 경우(A, B, C)를 구분해서 접근해야 하나 모든 경우에서 자료가 부재함

-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명시된 것과 같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국제회계기준과 세법상 연결납세의 연결납세요건은 상이하며, 기업의 지배구조를 분석하는 주된 자료인 전자공시시스템(DART) 상의 사업보고서의 연결재무제표는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무의결권 주식을 제외한 지분율을 제공함
 - － 연결재무제표 주식을 통해 의결권 있는 주식(보통주) 기준의 연결자기업 명단과 지분율을 확인할 수 있음
 - － 연결모기업이 발행한 무의결권 주식의 발행량을 확인할 수 있지만, 공시의무가 없는 연결자기업이 발행한 무의결권 주식의 경우는 발행자료가 부재함¹⁾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연결납세를 위한 연결지배요건(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중 90%)을 규정함에 있어 종전에는 포함되었던 의결권 없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하는 안에 대한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1) 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무의결권 우선주의 발행량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일부의 경우에 국한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이유섭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유섭	02-6788-4838	useuplee@assembly.go.kr